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1. 24 선고 2022가단11029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B

특별대리인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2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22,279,5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2,279,5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 김철환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인천광역시 부평구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부평구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

1층 130.76㎡, 2층 내지 4층 각 135.70㎡, 지층 90.64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인천광역시 북구 대 280.1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8.14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280.1분의 20.80 분.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의 관계

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'채권자'이고, 위 C은 위 양수금 채무의 '채무자'이며, 피고는 사해행위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'수익자'입니다.

2. 이 사건의 발생 경위

가. 양수금채권(피보전채권)의 존재

(1) 소외 주식회사 D은 2018. 10. 31. 소외 C에게 금 1,500만 원을 대여하면서, 대출만료일 2023. 10. 31., 이자율 연 21.97%, 지연이자율 연 23.9%로 각 정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 여신거래약정서 참조).

그런데 위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, 위 D은 2020. 1. 20.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(갑 제2호증의 1,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, 채권양도통지서 참조).

이후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C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(2020가소508164), 2020. 11. 12. 원고 승소의 재판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(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).

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C 은 원고에게 금 22,279,539원 및 그 중 금 14,110,884원에 대하여는 2022. 1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.97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(갑 제4호증 채권제산서 참조).

- (2) 그러므로 후순하는 사례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,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(1) 항의 채권액인 22,279,539원입니다.

나. 사례행위 및 사례의사의 존재

- (1) 위 C 은 2019. 10. 1.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 이라 합니다)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, 2019. 10. 2.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(갑 제5호증 동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).

- (2) 대법원은 '증여행위의 사례성' 과 관련하여,

"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례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례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대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." 고 판시하였습니다(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).

채무자인 소의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재산 가치 있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,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소의 C의 유일한 재산입니다.

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C의 2019. 10. 1.자 중여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.

(3) 또한 대법원은 “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독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독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.” 고 하는바(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),

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(1)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및 C 사이의 2019. 10. 1.자 중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.

(2)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

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인

2015. 4. 15. 접수 제31367호로 '채권최고액 4,800만 원', '채무자 C', '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' 인 근저당권설정등기(갑 5 율구 3 번 참조)

가 마쳐졌으나,

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

2021. 6. 9. 접수 제245705호로 인천지방법원의 2021. 6. 9.자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(E)가 마쳐진 후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, 2022. 2. 28. 매각대금 완납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,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한 말소될 운명에 있는 상황입니다(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갑 제6호증 경매사건검색 E 참조).

따라서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, 원고는 2022. 1. 10.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2,279,539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, '가액배상' 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.

3. 결 론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